##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2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 강득구 · 민병덕 · 이재정

이규민 · 소병훈 · 임오경

오영환 · 김철민 · 김승원

박상혁 · 홍기원 · 권칠승

박 정·고영인·서동용

서영석 • 이소영 의원

(17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,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·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·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본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하여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, 현행 교육행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

상,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1항 중 "170만명"을 "150만명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보조기관) ① 교육감 소속	제30조(보조기관) ①
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	
부교육감 1인(인구 800만명 이	
상이고 학생 <u>170만명</u> 이상인	<u>150</u> 만명
시·도는 2인)을 두되, 대통령령	
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공	
무원법」 제2조의2의 규정에	
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	
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	
보한다.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